

대법원 2016. 9. 28 선고 2016다227168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
피고, 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

판결 선고 2016. 9. 28

환송 판결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2다200363 판결

원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5. 20. 선고 2015나73219 판결

주 문

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76,548,750원에 대하여 2010. 6. 1.부터 2015.12.

24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

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소송총비용 중 30%는 원고가, 7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(이하 '특례법'이라고 한다)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이행의무의

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.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, 피고의 주장이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2. 기록에 의하면, 원고(이하 원고 소송수계인과의 합병 전후를 통틀어 '원고'라고 한다)의 이 사건 보증채무금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원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,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,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인용금액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 인 2011. 7. 8.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5. 12. 24.까지에 대하여도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특례법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3.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76,548,750원에 대하여 2010. 6. 1.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5. 12. 24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

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되,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,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소송총비용 중 30%는 원고가, 70%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